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제 목 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개진 요청

1. 전세연 제2024-120호(2024.09.24.)와 관련입니다.

2. 연합회 및 조합에서는 국회 및 환경부를 통해 현재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시까지 법 시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경유 차량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 기간 추가연장 건의 등 관련법 개정애 적극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, 최근 국회에서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행해온 경유자동차는 계속운행이 가능하도록 사용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, 특정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외 대체 자동차가 출시되지 않은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‘24.09.12. 조지연의원 대표발의)이 입법 발의되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의견 수렴 중에 있사오니, 각 사에서도 아래 사항 및 첨부자료(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)를 참고하여 현재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가. 입법 예고

- 의안번호 : 2203996

-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

나. 입법 예고 기간 : `24.09.13(금) ~ `24.09.27(금) 까지

다. 의견제출방법

1)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(pal.assembly.go.kr)

2) 진행중 입법예고 -> 법률안명 검색

※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번호 : 2203996

3) 의안번호 확인 후 해당 법률안 클릭

4) 의견등록 클릭 후 내용 작성 등록

※**조합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후 이용 가능합니다.**

※ 붙임 : 1)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.

2) 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1부. [끝]

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이사장 오성문

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상 무 박호동 이사장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4- 157호 (2024.09.24) 접수 ()
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

전화 02-422-0019

전송 02-418-0071 /

/ <http://www.tourbus.or.kr>

/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